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외교통일위원장

수정이유

동 법의 지원범위를 정상회의 뿐 아니라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하고,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미 설치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과 내용을 일치시키며,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를 준비기획단과 정상회의 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수정주요내용

가. 이 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함(안 제2조 등).

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 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에 맞추어 업무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다. 정상회의 등 준비와 관련된 사업 수행 주체를 심의기구인 준비위원회가 아닌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안에 대한 수정안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를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3조 중 “정상회의”를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정상회의가”를 “정상회의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상회의”를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외교부장관 · 법무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질병관리청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견기업연합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전단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정상회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상회

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상회의”를 각각 “정상회의등”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안 제10조 중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을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로 한다.

안 제11조 중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을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로 한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1항 중 “준비위원회는”을 “준비기획단은”으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중 “경주시장”을 각각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

다.

안 제15조 본문 중 “준비위원회가”를 “준비기획단”으로,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6조 중 “이 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17조 중 “준비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준비위원회”를 “준비기획단”으로 한다.

안 제18조를 삭제한다.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제16조”을 “제15조 또는 제16조”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상회의 관련시설”이라 함은 2025년 제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u>정상회의(이하 “정상 회의”라 한다)</u> 에 사용되는 회 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 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 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u>정상회의, 고위관리회 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 라 한다)</u> ----- ----- -----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u>정상회의</u> 관련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 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 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정상회의등</u> -----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정상회의가</u>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 <u>정상회의등이</u> ----- -----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 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의 준비와 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를

-----.

② -----정상회의등-----

-----.

제5조(정상회의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
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
행

7.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
집 등 지원

8. 정상회의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안전부장관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준비위원회의 위
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
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

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

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

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

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

<u>9. 산업통산자원부장관</u>	<u>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u>
<u>10. 국토교통부장관</u>	<u>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u>
<u>11. 해양수산부장관</u>	<u>관 · 대통령경호처장 · 국무조</u>
<u>12. 중소벤처기업부장관</u>	<u>정실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장</u>
<u>13. 경주시장</u>	<u>· 질병관리청장 · 방송통신위</u>
<u>14. 경상북도지사</u>	<u>원회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u>
<u>15.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경험</u>	<u>위원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u>
<u>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u>	<u>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u>
<u>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u>	<u>위원장</u>
<u>사람</u>	<u>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u>
	<u>자치단체의 장</u>
	<u>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u>
	<u>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u>
	<u>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u>
	<u>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u>
	<u>앙회 및 「민법」 제32조에</u>
	<u>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u>
	<u>·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견기</u>
	<u>업연합회 · 한국무역협회의</u>
	<u>회장</u>
	<u>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u>
	<u>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u>
	<u>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u>
	<u>및 민간 전문가</u>
<u>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u>	<u>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u>
<u>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u>	<u>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상회의 실무지원단) ①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지원
2.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확보·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무

⑤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⑥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

-----.

② -----

-----.

1. 정상회의등-----
2. 정상회의등-----

3. 정상회의등-----

4. -----정상회의등-----

③ -----
정상회의등-----

-정상회의등-----
-----.

④ -----
-----정상회의등-----
-----정상회의등-----

-----.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국유·공유재산을 「국유재
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
·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
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
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
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② (원안과 같음)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② -----

-----준비기획단, 정상
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
-----.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준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기관과 정상회의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준비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특별교통·숙박 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 본부예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회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

-----.

② (원안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

-----.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

-----.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회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정상회

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

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u>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u> <u>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u> <u>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u> <u>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u> <u>「상표법」 및 「디자인보호</u> <u>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u> <u>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u> <u>아니하다.</u>	<u>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삭</u> <u>제></u>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이</u> <u>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u> <u>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u>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 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u>준</u> <u>비기획단</u>----- ----- ----- -----.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의제) <u>준비위원회의 임직</u> <u>원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u> <u>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u> <u>비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u> <u>「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u> <u>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u> <u>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u> <u>다.</u>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 무원의제) <u>제12조에 따라</u>----- -----<u>준</u> <u>비기획단</u>----- ----- -----.
제18조(벌칙) 제15조를 위반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u><삭 제></u>

<u>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19조(과태료)</u> ① <u>제16조</u>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략) 부칙 <u>제2조(유효기간)</u> 이 법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그 효력을 가진다. <u>제3조(권리·의무 등의 승계)</u> 대 <u>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u>에 따라 설치된 <u>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u>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u>제18조(과태료)</u> ① <u>제15조 또는 제16조</u>----- -----. ② (원안과 같음) 부칙 <u>제2조(유효기간)</u> -----<u>2026년 6월 30일</u>----- -. <u><삭 제></u>
--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40
----------	------

발의연월일 : 2024. 8. 30.

발 의 자 : 김석기 · 박대출 · 신동욱
백종헌 · 고동진 · 박수민
배현진 · 박상웅 · 박준태
강명구 · 서천호 · 김 건
윤한홍 · 임종득 · 최은석
이종욱 · 이상휘 · 인요한
송언석 · 조지연 · 정성국
이달희 · 김태호 · 이철규
박형수 · 김성원 · 우재준
김선교 · 김기웅 · 김기현
박정훈 · 강선영 · 이만희
서명옥 · 윤상현 · 김용태
김상욱 · 윤재욱 · 주진우
임이자 · 윤영석 · 이인선
조경태 · 유용원 · 강대식
김위상 · 광규택 · 안상훈
박성훈 · 조배숙 · 엄태영
정희용 · 장동혁 · 송석준
권성동 · 천하람 · 한지아
조 국 · 박지원 · 이준석
나경원 · 최보운 · 김형동

최형두 · 김미애 · 유영하
차지호 · 이성권 · 김정재
이종배 · 배준영 · 강승규
김도읍 · 박덕흠 · 진종오
추경호 · 김장겸 · 안철수
조은희 · 박정하 · 박수영
김은혜 · 최수진 · 김예지
김소희 · 성일중 · 박충권
권영세 · 조정훈 · 서범수
복기왕 · 이주영 · 민홍철
이헌승 · 강민국 · 정연옥
김민전 · 김재섭 · 한기호
황운하 · 정점식 · 신성범
김병기 · 김정호 · 김종민
강경숙 · 정춘생 · 허성무
서영교 · 주철현 · 이연희
안태준 · 문금주 · 허종식
박홍배 · 양부남 · 문진석
이개호 · 장종태 · 박은정
어기구 · 박범계 · 김민석
임미애 · 박홍근 · 김선민
김주영 · 이해민 · 박용갑
김재원 · 이춘석 · 서미화
서삼석 · 모경중 · 정동영
이상식 · 전용기 · 이재관
박지혜 · 서영석 · 권향엽
염태영 · 김태년 · 정성호

김원이 · 김영호 · 강훈식
전재수 · 김동아 · 조인철
박수현 · 이해식 · 박 정
정일영 · 임오경 · 추미애
임호선 · 위성곤 · 안규백
주호영 · 김영배 · 이양수
김종양 · 서일준 · 김대식
유상범 · 김승수 · 조승환
권영진 · 박성민 · 정동만
서지영 · 김희정 · 구자근
김상훈 · 이용선 · 이재명
조정식 · 한정애 · 윤후덕
위성락 · 권칠승 · 이재정
이재강 · 김준형 · 홍기원
우원식 · 이학영 · 정청래
김승원 · 강선우 의원
(191인)

제안이유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라 한다)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안 제2조).
- 나.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준비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회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항).

차. 대통령훈령 제459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부칙 제3항).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이 법의 지원 범위를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로 확대함(안 제2조 등).

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을 대통령 훈령 제470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 규정에 맞추어 업무범위 등을 정비함(안 제5조, 제6조).

다. 정상회의 등 준비와 관련된 사업 수행 주체를 심의기구인 준비위원회가 아닌 준비기획단과 개최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2025년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상회의 관련시설”이라 함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제반 회의(이하 “정상회의등”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주변공원·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회의 준비위원회) ①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상회의등의 개최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상회의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통령경호처장·국무조정실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질병관리청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

장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 중견기업연합회 · 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 ④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6조(정상회의 준비기획단)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2.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 · 장비 · 시설 등의 확보 · 운영
3.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 집행
4.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 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연구·자료수집 등 지원
 8. 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 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4. 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

다.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준비기획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특별교통·숙박대책 수립) ①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

③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

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 교통·숙박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12조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과태료)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